

의안번호	제3060호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

의결 사항	
----------	--

고성군 자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	허옥희 의원
발의연월일	2026. 3. 6.

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(허옥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6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6. 3. 6.

발 의 자: 허옥희 의원(1인)

찬 성 자: 우정욱, 최두임, 김석한,
이쌍자, 김향숙, 정영환,
이정숙 의원(7인)

1. 제안이유

최근 공무원 중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공직의 안정성 저하, 인력 부족, 업무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고성군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
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
마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청원경찰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6-2호

- 예고기간: 2026. 3. 6.(금) ~ 3. 12.(목)[6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4. 본 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저연차 공무원”이란 고성군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 및 고성군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
2.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
3. 「청원경찰법」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

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
2.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제6조(지원 사항) 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공직 업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
2.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
3.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,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
4. 주거 및 교통 등 복지에 관한 사항
5. 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6. 문화생활을 위한 관내 공연 및 영화 관람 장려에 관한 사항
7. 타 기관 연수, 민간·공공기관 방문 학습, 정책 현장 체험 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,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

여 공공기관, 관련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성군 자연차 공무원 공직 적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안 제6조(지원 사항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행정과장 이 기 동

관 계 법 령(발췌)

□ 지방공무원법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, 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“경력직공무원”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2. 특정직공무원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삭제 <2012. 12. 11.>

③ “특수경력직공무원”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무직공무원

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
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2. 별정직공무원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삭제 <2012. 12. 11.>

4. 삭제 <2011. 5. 23.>

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·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(이하 “임기제공무원”이라 한다)을 임용할 수 있다.

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청원경찰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청원경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·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{이하 “청원경찰경비”(請願警察經費)라 한다}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·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(警備)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.

1.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
2. 국내 주재(駐在) 외국기관
3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, 사업장 또는 장소